함께하는
FTA

December 2013
www.ftahub.go.kr | vol. 19

2013년 한국 FTA의 현주소

FTA로 한국 경제영토 35배 넓혔다

핫 이슈: 한·호주 FTA 협상 타결, TPP 참여 관심 표명

다치안 치올로슈(Dacian Cioloș)–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 및 농업발전 집행총국 위원장

“한국의 수준 높은 음식 문화 기대할게요.”

Dacian Cioloș
EU Commissioner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연합의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다치안 치올로슈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EU 소속 농림부 장관들이 저희 EU집행위원회 농업 및 농업발전 집행총국이 수립한 정책들을 집행합니다. 지난 11월 13일과 14일에 저는 한국을 방문해 고품질의 유럽 식품을 알리는 ‘유럽의 맛(Taste of Europe)’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EU에 가입한 28개 회원국의 다양한 식품과 요리를 알리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었죠. 또한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과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와인, 치즈, 맥주, 햄, 올리브유 등을 통해 유럽의 맛을 즐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럽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음식 문화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다양한 특색을 갖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전통의 음식 문화를 갖고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깐깐한 입맛에 맞추다 보면 한국 농식품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준 높은 한국 식품은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충분히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지난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로 한국과 유럽은 하나의 시장이 됐습니다. 한·EU FTA로 5억 명의 유럽 소비자 시장이 한국의 농민과 식품기업에 열렸지요. EU는 농산품의 고부가가치와 전통·스토리를 입힌 농산물과 식품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유럽 진출을 노리는 한국의 식품업체와 농민들도 이런 전략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는 교류할수록 발전하는 것처럼, 음식 문화 또한 교류를 통해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집니다. 많은 한국인이 유럽의 맛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유럽인들도 유서 깊은 한국의 맛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맛이 유럽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잘 알려진다면, 유럽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세계인이 한국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한국인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유럽의 맛’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새로운 식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개방적인 EU의 소비자들도 ‘한국의 맛’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리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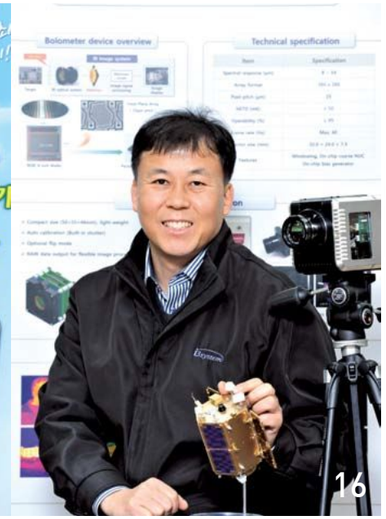

FTA 캠페인 | 01 다치안 치올로슈–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 및 농업발전 집행총국 위원장

핫 이슈 | 04 한 · 호주 FTA 협상 타결

송년특집 | 06 한국 FTA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10 한국, FTA로 무엇을 이뤘나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파워 인터뷰 | 12 이경태 FTA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

기관 탐방 | 14 제주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 천하 | 16 2013 FTA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아이쓰리시스템

지상중계 1 | 18 '글로벌 FTA 경쟁체제에서의 한국의 과제와 전략' 심포지엄

지상중계 2 | 20 개정 정부조달 협정(GPA) 설명회

FTA 카툰 | 21 걱정은 저희에게 맡기고 수출만 하세요!

정책 공감 1 | 22 FTA 피해 구제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정책 공감 2 | 24 미국 세관(CBP)의 사전심사제도 활용하기
강동구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FTA 활용 | 26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28 한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완전정복
이민선 관세사(Ciel HS)

생생 리포트 | 31 까다로운 통관 애로, 한 · 베트남 FTA 체결 시 해결 기대
홍석균 KOTRA 호치민 무역관 차장

FTA 아카데미 | 34 FTA 효과 실현을 위한 조건들
이경희 신세계그룹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FTA 뉴스 | 36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 개최 등

컬처 윈도우 | 38 FTA 체결국의 이색적 크리스마스 축제를 가다

별별랭킹 | 40 2013년 FTA 5대 뉴스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3년 12월 9일(통권 19호) **발행**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홈페이지 http://ftahub.go.kr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호주 FTA 협상 타결

8년 내 대다수 품목 관세 철폐 합의

우리나라와 호주 간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5일 "한국과 호주 양국은 지난 3~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에서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합의를 도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가서명하기로 했다.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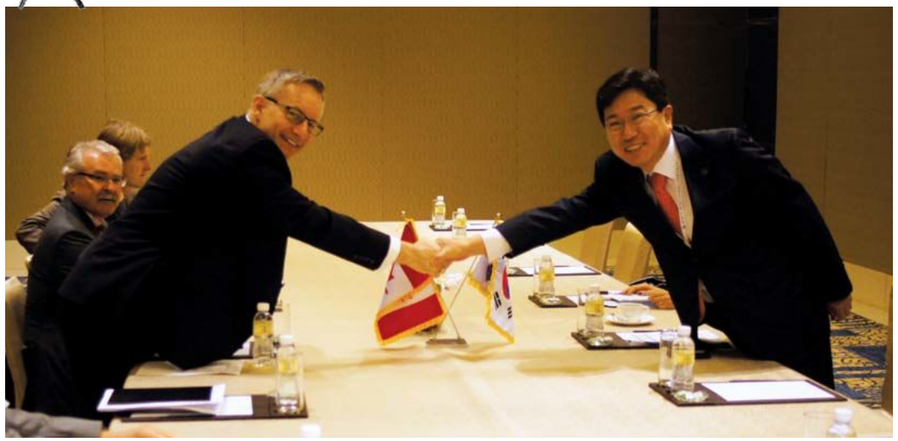

한·호주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이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의 FTA 협상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양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호주 측은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거의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고, 우리는 호주로부터의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에 철폐한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호주 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우리는 90.8%를 8년 내에 각각 철폐한다.

호주, 우리나라 7대 교역국으로 보완적 무역구조 지녀

특히 관세율 5%이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주력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와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한다. 나머지 승용차는 3년 내에 철폐한다. 2012년 기준 우리 자동차는 호주로 21억 1400만 달러 수출돼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과 전기기기(관세율 대부분 5%), 일반기계(관세율 5%) 대부분도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단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 내에 철폐한다.

하지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쌀, 분유, 과실(사과·배·감 등), 대두, 감자, 굴, 명태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철폐한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은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해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했다. 무역구제에 있어서 한국과 호주는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쇠고기, 정제 설탕, 맥주보리, 맥아, 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고, 반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에는 제로잉(zeroing)에 대한 금지원칙 적용관행을 확인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각각 한·미 FTA,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한다.

2012년 기준 호주는 우리나라의 일곱 번째 교역국이고, 우리나라는 호주의 네 번째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호주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후주는 우리나라에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

TPP 참여 관심 표명 –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예비 양자협의' 단계

거대시장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 점검 예정

정부는 12월 2일 열린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로 했다. '관심 표명'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하여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감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참여 선언'과는 다르다.

TPP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FTA로,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포함 총 12개국이 참여해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이다. TPP 참여 시 아태 지역 거대시장을 확보하고, TPP 역내에서 이미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TPP 협상 동향과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참가 조건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TPP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참여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분석해 왔다. 또한, TPP 참여 시 TPP 참여국 중 농·수·축산물 수출국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일본 등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우려에 따른 민감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WTO 각료회의(12월 3~6일, 발리) 등을 계기로 기존 TPP 참여국에 우리의 관심표명 의사를 전하고 향후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결과, TPP에 대한 산업별·분야별 심층 영향분석 결과 및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평가·검토한 후,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TPP 협상 참여 절차

관심 표명 →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 공식 참여 선언 → 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 → 공식 협상 참여

한국 FTA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FTA 변방에서 중심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FTA 한국

2013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나라 FTA 추진에 상당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타결했고,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을 개시하고 TPP에도 관심을 표명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논의를 가속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新)통상 로드맵의 발표는 우리나라 FTA 역사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라 평가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글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우리나라 FTA 추진 역사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꼽는다면 우선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상대로 칠레를 택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우리의 FTA 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해 한·EU FTA, 한·미 FTA를 발효한 것도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FTA 주변국에서 FTA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적극적 FTA 정책의 채택과 한·칠레 FTA 추진

과거 우리나라는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보다는 다자주의에 방점을 두고 WTO 체제 하에서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조류에 뛰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바꾸어 우리나라가 다자주의뿐만 지역주의에도 적극 임하게 되는데, 이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

1990년대 후반, FTA 체결이라는 우리나라의 방향 선회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뤄졌다. 다자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WTO가 1995년 출범한 이후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에 FTA가 확산되면서 FTA를 추진하지 않은 국가들은 상대적 불이익에 노출되었다. FTA가 체결국에게만 배타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만큼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도 FTA를 택하게 된 것이다.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 역시 FTA를 선택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체질 개선을 요구받았다. 안정적인 수출 시장의 확보, 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경제제도의 선진화, 투자 유치 및 고용 확대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1998년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정책을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첫 번째 FTA 파트너로 칠레를 선택했다. 첫 상대로 칠레를 선택한 데에도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칠레와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고 칠레와 우리나라가 상호 보완적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를 추진하는 칠레로부터 FTA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FTA로 인한 농업 개방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칠레가 농수산물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태평양 건너 남반구에 위치해 우리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고 계절이 반대여서 작물의 소출 시기가 달라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도 칠레를 선택하게 된 데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FTA 로드맵 작성, 미국 및 EU와의 FTA로 결실 맺어

2002년 한·칠레 FTA 협상이 타결된 이듬해인 2003년 우리나라는 향후 FTA 추진 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했다. FTA 로드맵은 체결 상대, 추진 방법, 목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대·선진 경제권'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며, 이러한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FTA 후발주자로서 경쟁국들을 따라잡겠다는 전략과 함께 경제적 효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거대·선진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 추진을 목표로 삼았으며, 단기적으로는 이들과의 FTA 이전에 그 주변국 가운데 협상 개시가 가능한 국가와의 FTA를 추진해 교두보로 삼고자 했다. 실제로 EFTA와의 FTA가 EU와의 협상으로, 싱가포르와의 FTA가 ASEAN과의 협상으로, 멕시코와의 협상이 미국과의 FTA로 이어지는 발판 역할을 하였다. 이같이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목표로 한 것은 수출 시장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낮은 수준이 아닌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목표로 했다. 그리고 FTA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이러한 협상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하게 된다. 뒤쳐진 FTA를 일거에 만회하기에는 유효한 전략이었다.

결국, 이러한 전략 하에서 추진된 FTA는 2011년 7월 한·EU FTA,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로 이어진다.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선진 경제권이다. 또한 이들과의 FTA는 투자, 서비스, 지재권 등 폭 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FTA이기도 하다. 당초 상정해 두었던 FTA 목표가 한·EU FTA, 한·미 FTA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9건 46개국(크로아티아 미포함)까지 확대됐다. 세계 경제에서 FTA 변방에 머물렀던 우리나라가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은 물론 인도, ASEAN 등 주요 신흥시장과 모두 FTA를 발효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발 빠른 전략으로 FTA 추진 성과, 경쟁국에 앞서나가

우리나라 FTA 추진 성과는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경쟁국가간의 FTA 교역비중 비교 등을 통해 상대적인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FTA 교역비중이란 해당 국가의 전체 교역액에서 FTA 발효 국가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를 통해 현재 교역에서 관세인하 등 FTA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 비중이 높아지거나 경쟁국에 비해 앞설수록 보다 유리한 무역환경에서 수출입이 가능해진다.

한·중·일 FTA 교역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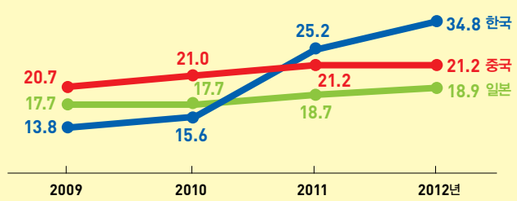

자료: IMF DOTS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 2009년만 해도 13.8%에 머물렀다. 전체 교역에서 10분의 1이 약간 넘는 정도만 무역자유화 효과를 누렸던 것이다. 당시 중국(FTA 교역비중 20.7%), 일본(17.7%)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에 비해 FTA 추진이 뒤쳐지고 있었다. 2010년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며 FTA 교역비중이 15.6%까지 확대되었지만 경쟁국과의 격차는 여전했다.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앞서 나가게 된 것은 2011년 EU와의 FTA가 발효되면서부터이다. 한·EU FTA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인 만큼 교역 비중을 일거에 끌어올릴 수 있었다. 여기에 같은 해 페루와의 협정도 발효되면서 FTA 교역비중은 2011년 25.2%까지 확대됐다.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앞서나가던 중국과 일본은 2010~2011년 각각 싱가포르 및 페루, 스위스 및 베트남과의 FTA를 발효했지만, FTA 발효국가와의 수출입 규모가 크지 않아 FTA 교역비중을 큰 폭으로 확대시키지 못했다.

2012년 들어서 우리나라는 경쟁국과 FTA 교역비중 격차를 더욱 벌려나갈 수 있었다.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며 FTA 교역 비중을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 34.8%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올해에도 터키와의 협정이 발효되며 FTA 교역비중은 35.3%로 늘어났다. 반면에 중국은 21.2%, 일본은 18.9%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입지나 무역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해관계자를 깊고 넓게 포괄하며 국내 제도도 진화

FTA의 역사 속에 단순히 FTA 추진의 외형적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의 관련 제도도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FTA 협상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2004년 FTA 체결 절차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협상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2012년 7월부터는 통상절차법이 시행되고 있다.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위해 마련한 국내보완대책도 FTA 확대에 걸맞게 확충되어 왔다. 피해 보상에서 경쟁력 강화로, 농어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되었고, 재정 규모의 확대와 함께 제도의 발동 기준도 완화되고 있다.

FTA로 경제영토 35배나 늘린 한국

56.2%로 세계 3위…RCEP 체결 시 81.2%까지 확대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012년 명목 GDP, Global Insight 기준)에 그친다. 우리 주변의 일본 8.2%, 중국 11.4%에 비하면 내수시장 규모가 매우 협소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해 이를 극복해가고 있다.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영토란 전 세계 GDP에서 FTA를 발효한 상대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때문에 경제영토를 통해서는 FTA 혜택을 바탕으로 개척 가능한 시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FTA를 발효한 상대 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경제영토는 현재 세계 경제의 56.2%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인 것에 비하면 경제적 영토를 35배나 확장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무역자유화의 혜택 속에서 누빌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내수시장 규모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앞질렀지만, FTA를 통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현재 일본의 경제영토는 세계 GDP의 17.1%, 중국의 경제영토는 16.2%에 그치고 있다.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큰 폭으로 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내수시장의 협소함이 극복됨은 물론 경쟁국에 위치한 기업보다 유리한 무역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해 온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정책을 통해 경제영토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콜롬비아와의 FTA가 현재 발효를 위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경제 규모가 큰 협상들도 본격화 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호주 FTA 협상도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멀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FTA들이 모두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최대 81.2%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광활한 경제영토는 저절로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마련된 것은 보다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일 뿐이다. 실제로 FTA의 무역자유화의 혜택은 기업들의 실제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FTA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고, 정부 및 유관기관들도 FTA 활용 지원 제도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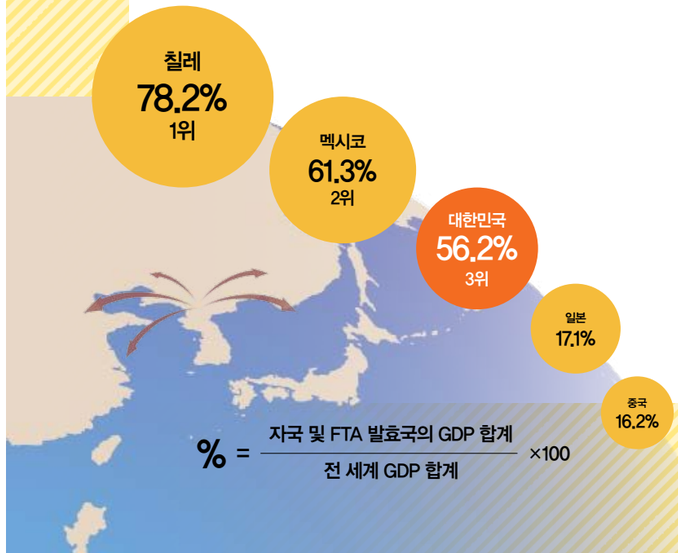

FTA로 확보한 한·중·일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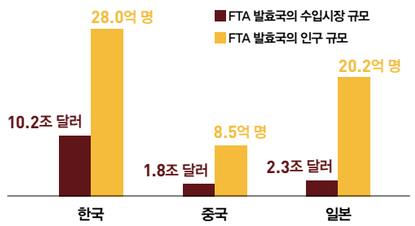

주: 2013년 11월 FTA 발효 기준, 현재 세계 GDP에서 해당국가의 FTA 발효 상대국 수입시장과 인구의 합계(Global Insight)

주: 2013년 11월 FTA 발효 기준, 2012년도 GDP 기준(Global Insight)

한국, FTA로 무엇을 이뤘나

수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 커… 우려만큼 부작용은 크지 않아

2013년은 한국이 FTA 무역을 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다.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경험을 쌓아가면서 ASEAN,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도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세계 3위로, 양적인 면에서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결과를 이뤘다. 그렇다면 질적으로 얼마나 내실에 충실한 성과를 거두었을까.

글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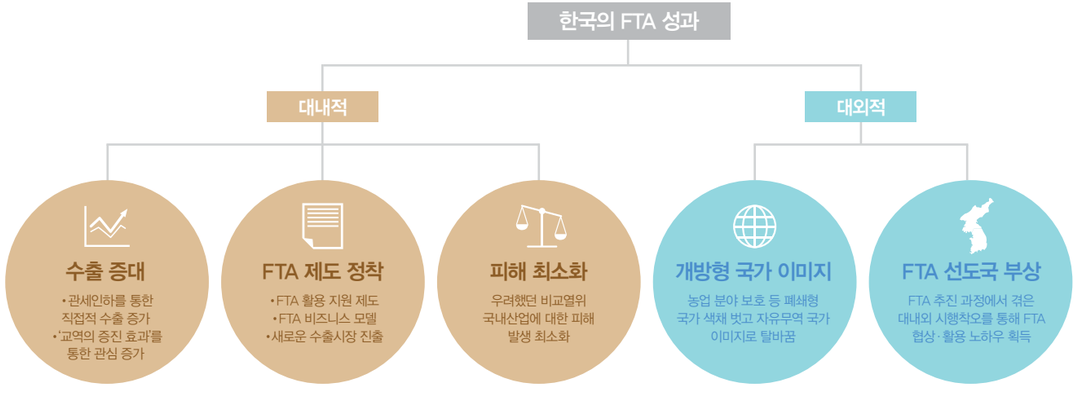

201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46개국을 포괄하는 9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FTA 체결국과의 교역은 2012년 교역통계를 기준으로 수출 2,080억 달러, 수입 1,665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입에서 각각 38.0%와 32.0%에 해당하는 규모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양자간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FTA 후발참여국에서 동아시아의 FTA 선도국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했다. 우리나라의 5대 주요 교역대상국(또는 경제권) 중 ASEAN, 미국, EU와의 FTA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서남아시아의 대표적 신흥개도국인 인도, 그리고 태평양 넘어 칠레, 페루 등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웃 국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 일본과의 FTA도 다양한 형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FTA를 맺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제품 관심 끌어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1997년~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촉발되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됐고 이를 위한 국내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FTA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부상했다. 이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기존의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 위주로 재편되고, 동시에 산업정책도 보호를 통한 국내산업 육성에서 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경제권(또는 국가)과 높은 수준의 FTA를 진행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FTA 후발참여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외국 시장에서 유리한 혹은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발판을 제공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증대를 꼽을 수 있다. FTA를 통해 상대국의 관세가 철폐 혹은 감축되면서 국내기업의 수출품이 상대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순수한 관세 철폐 효과뿐만 아니라 FTA는 체결 자체만으로도 양자 간 교역의 증진효과(promotion effect)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한·칠레 FTA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은 발효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러한 빠른 수출증가는 단지 칠레의 관세 철폐에 의한 효과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한국과 칠레가 'FTA를 체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양국 간의 교역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FTA가 발효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점도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성공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과 같은 새로운 규범과 제도가 도입되고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형 발굴 등 FTA 이행에 따르는 많은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회나 업계를 중심으로 한 노력은 이러한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FTA 추진으로 우려되었던 국내 농업부문에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국내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한·칠레 FTA나 한·ASEAN FTA, 한·미 FTA 등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농업부문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쇄적 국가 이미지 벗고 개방형 국가로 발돋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개방형 국가로 변모하였음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자국 산업 보호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적 색채가 강한 폐쇄적 국가의 성격이 강했다면 적극적인 FTA 추진은 대한민국이 국제 통상에서 더 이상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무역자유화에 동참하는 개방형 국가로 이미지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 등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의 FTA 선도국으로 부각되면서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왔으며 역내경제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물론 FTA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분명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FTA를 추진하면서 국내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했고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국내적으로 FTA 추진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없었던 유형·무형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은 이제 결승선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나 한·중·일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이 마무리되어 중국, 일본과의 FTA가 완료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FTA에서 '경제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국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FTA에서 얼마나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우리나라 FTA 정책의 최종적인 성과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과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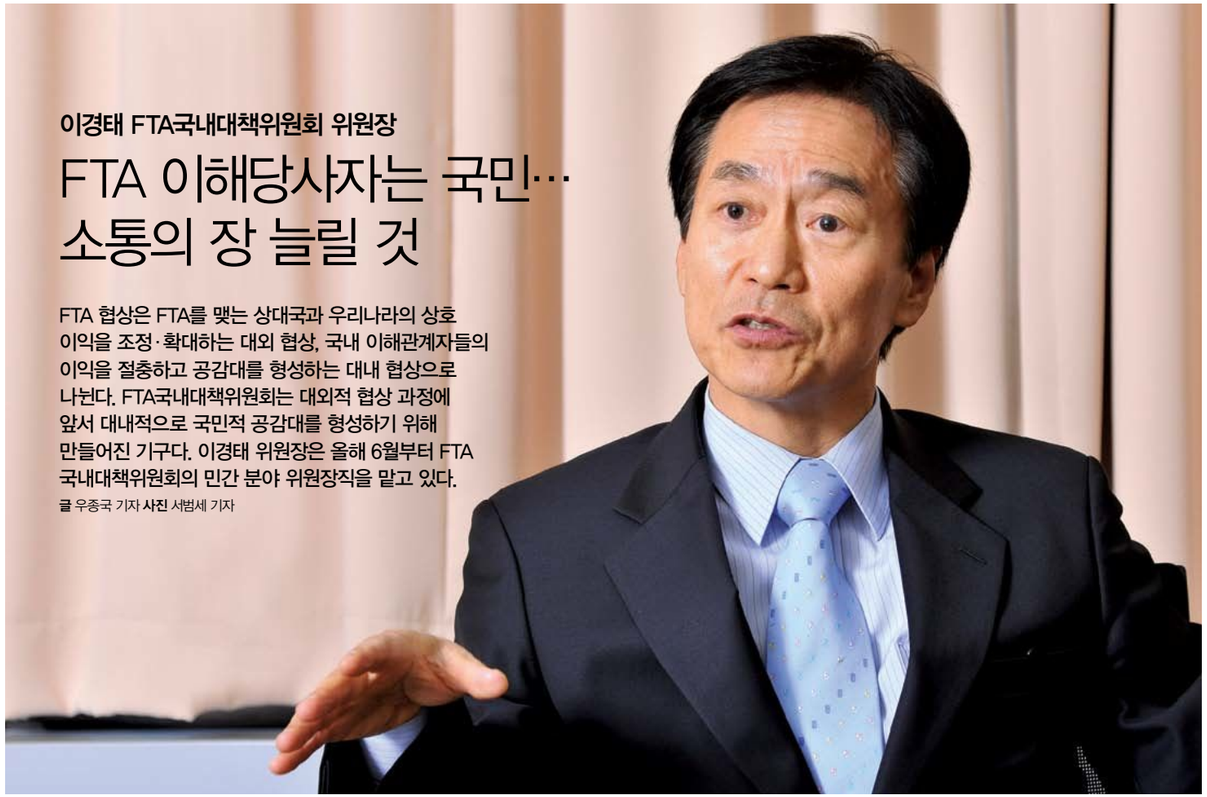

이경태 FTA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

FTA 이해당사자는 국민… 소통의 장 늘릴 것

FTA 협상은 FTA를 맺는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상호 이익을 조정·확대하는 대외 협상,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절충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내 협상으로 나뉜다. FTA국내대책위원회는 대외적 협상 과정에 앞서 대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이경태 위원장은 올해 6월부터 FTA 국내대책위원회의 민간 분야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늦었지만 위원장직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FTA 협상을 할 때 대외적 협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 협상도 있습니다. 대내적 협상이라고 해서 실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내적으로 국민적 지지 없이는 대외적으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한·미 FTA 때 경험한 것처럼 여론이 양분되면 대외 협상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FTA 협상에 필요한 국민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FTA국내대책위원회입니다. 정부 각 부처와 민간 위원이 반씩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쪽, 제가 민간 쪽을 대표하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지요. 민간 위원은 농민단체, 중소기업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의 경제단체, 그리고 경제와 통상 분야 교수들이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FTA 협상의 의도, 효과, 피해 등을 논의하는데, 특히 피해 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이고, 사람은 누구나 피해를 받으면 반발하게 마련이니까요.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려 한다'고 하면 '좀 더 보완해 달라'는 식으로 정부와 민간 사이에 소통이 이뤄집니다. 국민은 실제로 FTA의 손익을 보는 이해당사자이고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협상의 주체인 만큼 국민들의 실익이 커지도록 협상을 하고 FTA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의 어려움은 청취하고 합리적인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겠지요.

국내대책위원회 회의는 언제 개최되나요?

관련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는데, 한·EU FTA, 한·미 FTA 협상 이후 회의 개최 빈도가 좀 줄었다가 다시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회의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된 이후 7월과 10월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중 FTA 1단계가 마무리되고 이제 2단계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양허대상을 논의하는 만큼 앞으로 회의가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회의를 자주 해야 한다'고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산업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고, 국민과 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고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잘 모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중 FTA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는데 농업 등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제가 놀란 것이 농민단체 대표가 한·중 FTA를 대비해 중국 현지 시장조사를 했다면서, '중국 시장이 우리 농식품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인상을 받고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국민 소득이 늘면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식품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제조업이 정부 지원으로 성장했듯이 농식품 분야 산업이 커지는 데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일반 산업계의 경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수준이면 중국 내수시장이 커질 때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많았는데, 그간 투자 관련한 지원 체계가 없이 진행됐다면, FTA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되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한·중 FTA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한·중 FTA에 대해서도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약력

- 1947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1974~1983년 행정고시 합격, 재무부
- 1983년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 1998~2001년, 2005~20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2001~2004년 OECD 주재 한국대사
- 2008~2011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 2013년 FTA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현)

그간 한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향후 한국 정부가 FTA를 추진하면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FTA 전략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양자간 FTA에 치중했다면 이제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다자간 FTA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간의 FTA 경험을 십분 발휘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TO의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인데, 이 때 한국이 '미들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협상 질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 비상근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난해 3월부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주 1회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발전론'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강의 시간을 통해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 경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왔는가를 알리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 있는 듯합니다. 저희 세대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은데도 안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한국이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 많은 것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중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가 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여름까지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하는 한국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에티오피아를 세 번 방문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방문은 처음이었는데 빈곤이 '길에 널렸다'고도 할 정도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같이 간 젊은이에게 '한국도 옛날에 이랬다'고 하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세대가 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다보면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FTA활용지원센터

청정 제주 농식품의 국제 경쟁력 키웁니다

제주도의 제조업(2차 산업)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4.1%다. 1차 산업의 비중이 17.6%이며, 세계적인 관광 명소답게 3차 산업 비중이 78.3%에 이른다(201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이러한 제주의 산업 구조 특성상, 제주 FTA활용지원센터는 타 지역의 FTA활용지원센터와는 다른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제주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제주센터)는 2011년 10월 개소한 이래 타 지역 센터와 마찬가지로 FTA 설명회,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찾아가는 컨설팅 등 FTA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고 농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의 특성상 제주 FTA활용지원센터는 FTA 활용과 더불어 FTA 홍보에도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FTA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 FTA 활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차 산업의 주체인 농협, 영농조합, 영어조합법인,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FTA와 관련한 밀착형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제주산 청정 원료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웰빙 식품의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

주센터의 한·아세안 FTA 활용 실적은 지난해 9건에서 올해 11월까지 19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제주 지역 수출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19.8%), 중국(4.4%), 미국(4.3%), 대만(4.0%) 순으로, 현재 협상 진행 중인 한·중 FTA에 대해 제주 수출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일본 대상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향후 추이도 주시하고 있다.

사례 1

감귤·녹차·한라봉·복분자 초콜릿 제조사 J사

청정자연 제주의 맛 동남아 진출 청신호

2006년 설립된 J사는 제주도 청정 자연에서 생산되는 감귤, 녹차, 한라봉, 복분자를 초콜릿에 접목시킨 제품을 만들어오고 있다. J사는 지난해 매출 80억 원으로 종업원 58명의 비교적 규모가 있는 업체로서 세계적인 제과업체로 발돋움하려는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100만 달러(약 11억 원)로 주요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다.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초콜릿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J사는 해외 초콜릿 박람회 참가 때 태국 바이어에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고 제주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품목분류 결과, 해당 제품은 HS코드 1806.32(속을 채우지 아니한 초콜릿)로서 한·아세안 FTA에서의 원산지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이었다. J사는 초콜릿의 원료인 밀크코코아와 다크코코아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한·아세안 FTA의 누적 기준을 활용해 역내산 판정이 가능했다. 또한 국내산 구운 아몬드는 원산지확인서를 수령해 최종적으로 역내산 재료의 가치가 90% 이상으로 확인돼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제주센터의 강수철 관세사는 "J사의 수출 과정은 FTA가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mini interview

"현장 농가 방문해 FTA 홍보 강화"

강태욱
제주FTA활용지원센터장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제주도는 타 지역과는 FTA 활용 현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주의 지역적 특성상 관광서비스업이 가장 비중이 높고, 1차 산업은 FTA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농가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FTA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생산자 단체를 방문해 한·중 FTA에 대비해 농산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주요 수출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인데요. 최근 청정지역 원료를 이용한 화장품과 웰빙 식품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업체로는 선박 부품을 조립해 수출하는 곳이 있고요.

타 지역 센터와는 차별화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주센터의 모든 상황들이 타 지역과는 상이하지만, 사업을 보면 농민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홍보활동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주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무역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8월에 각 50명씩 2박 3일 간 진행했고, 내년에는 고교생도 참가 대상에 포함시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7-2164~6

JEJU
제주 FTA활용지원센터의 FTA 컨설팅 사례

사례 2

유기농 오가피 진액 제조사 H사

제주산 친환경 농식품의 미국 수출 길 열려

H사는 제주산 친환경 유기농 섬오가피를 원료로 진액을 만들어 판매하는 종업원 3명의 규모의 작은 업체다. 2년 전 H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판 관계자를 통해 현지 시장성을 조사했으며, 미국 FDA 인증과 수입 허가를 받아 올해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시작했다. 그러나 3명 규모의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 FTA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어 제주 FTA활용지원센터에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의뢰했다.

섬오가피진액은 HS코드 1302.19(기타 식물성 수액과 엑스)로 한·미 FTA의 원산지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해당 제품은 제주에서 직접 재배한 섬오가피(HS코드 1211.90) 97%와 감초(HS코드 1211.60) 3%를 원료로 하고 있어 원산지기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지 않은 일부 원재료가 있었으나 해당 재료 모두 HS코드 2단위(12류→13류)가 변경됨을 자재명세서(B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수출 물량이 적어 해당 제품의 한·미 FTA 혜택은 미미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H사는 제주센터의 무료 컨설팅을 통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 수출 길에 무사히 오를 수 있었다.

2013 FTA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아이쓰리시스템**

“수출 초보이지만, FTA 활용은 베테랑입니다.”

‘아이쓰리시스템’은 때를 잘 만났다. 아이쓰리시스템의 생산 제품은 군용 무기의 부품으로서 민간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었다가 2012년 판매 금지가 풀렸다. 때마침 한·EU FTA,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아이쓰리시스템’의 수입품·수출품의 수출입 관세가 인하됐다. ‘아이쓰리시스템’은 FTA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방위산업체인 ‘아이쓰리시스템’은 2012년 전략물자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해지자 FTA 활용 수출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회계·재무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완영 경영지원부 차장은 수출 초기부터 FTA 활용에 발 벗고 나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적군과 아군이 구분되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전쟁터, 적군은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포탄에 무참히 당하는데, 아군은 적군의 위치와 움직임을 낮과 같이 훤히 볼 수 있다면? 아군의 승리는 불 보듯 뻔하다.

어둠 속에서 물체마다 발산하는 고유의 적외선을 증폭해 밝은 빛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가 있으니 바로 적외선 감지기다. 장비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는 현대전에서 적외선감지기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앞당기는 필수 전략물자로 탱크, 헬기는 물론 포병에게도 필수적인 장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외선감지기 생산 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기밀로 보호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를 생산하는 나라도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7개국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또한 적외선감지기 생산국 중 하나다. 바로 ‘아이쓰리시스템’이 군사용 적외선감지기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7개국만 생산 가능한 기술

엄밀히 말하면 ‘아이쓰리시스템’은 적외선감지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해 방위산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다. 그러나 ‘아이쓰리시스템’의 제품이 없었다면 완성품 업체는 적외선감지기 부품을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한다. 그마저도 생산하는 나라 정부가 수출을 허가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아이쓰리시스템’이 만드는 부품 중 핵심은 반도체의 일종인 적외선소자다. 디지털카메라의 영상 센서에 들어가는 CCD(charge coupled device) 또는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소자와 원리는 비슷하나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을 감지하는 것이 다르다. 적외선소자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기술로서, 가격도 훨씬 비싸다. ‘아이쓰리시스템’조차 2003년 기술 개발을 시작해 올해부터 비로소 양산에 들어갔다.

‘아이쓰리시스템’의 창업자인 정한 사장(54)은 현대전자 반도체사업부 출신으로 카이스트 석·박사 과정에서 적외선검출기를 연구했다. 1998년 한꿈엔지니어링을 창업해 내시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KEC(한국전자)에 적외선검출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던 중, 내부 사정으로 KEC가 사업을 접자 국방과학연구소의 의뢰로 직접 적외선검출기 핵심부품 개발에 나섰다. 2003년 사명이었던 한꿈엔지니어링을 ‘아이쓰리시스템’(Intelligent Image an Information System)으로 변경하고 현재는 적외선검출기와 X-레이 검출기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적외선감지기 부품은 전략물자이다 보니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수출을 하려면 EL(Export License: 수출 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구매 또는 수입을 하려면 EUC(End User Certificate: 최종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아이쓰리시스템’ 제품도 전략물자로서 통제를 받다 보니 2011년까지는 수출 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방산물자 수출 드라이브정책에 따라 ‘아이쓰리시스템’도 2012년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

때마침 발효된 한·EU FTA와 한·미 FTA는 ‘아이쓰리시스템’에게 호재가 됐다.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 수입하던 부품이 한·미 FTA와 한·EU FTA로 각각 8%이던 수입관세가 철폐됐고, 주 수출국인 스웨덴, 싱가포르에 FTA 특혜 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스웨덴의 경우 한·EU FTA로 인해 4.7%이던 수출 관세가 철폐됐다. 이러한 FTA 효과로 2012년 2억 원이었던 수출액은 2013년(1~10월) 10배인 20억 원으로 늘어났다. 매출도 지난해 224억 원에서 올해 260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 생산이 늘면서 직원 수는 148명(2011년)에서 166명(2012년), 200명(2013년)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3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성과를 거둔 아이쓰리시스템은 ‘2013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3개 업체가 수상)을 받았다. 왼쪽 두번째가 이완영 차장.

FTA 차근차근 밟아가니 어느새 해결

‘아이쓰리시스템’의 경우 수출하는 방산물자가 수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고 장기 계약이 많아 영업부서가 따로 없어 경영지원부에서 FTA 활용을 도맡았다. FTA 활용은 처음이었던 경영지원부의 이완영 차장은 “관세사와 세관 직원에게 문의해 FTA 지식과 정보를 얻고 세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의 다양한 설명회를 찾아 다녔다”고 한다. 그 노하우를 이용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품의 품목 분류를 받았고,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도 받았다.

FTA 활용의 성공 비결을 묻자, 이완영 차장은 “기존에 수출이 이뤄지지 않던 물품인데다, 수입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전문가들도 품목 분류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저와 엔지니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찾아가서 제품과 생산 과정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야 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원칙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어느새 FTA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졌습니다. 다행히 기회가 잘 맞아 FTA 활용 성과를 냈지만 무엇보다도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이쓰리시스템이 생산하는 적외선검출기는 전 세계에서 7개국만 생산할 정도로 까다로운 기술이 요구된다.

지상중계 1 ‘글로벌 FTA 경쟁체제에서의 한국의 과제와 전략’ 심포지엄

최근 우리 정부가 관심 표명한 TPP 참여, 대세론과 신중론으로 의견 다양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선진통상포럼이 주최한 ‘글로벌 FTA 경쟁체제에서의 한국의 과제와 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통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과 80여명의 FTA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제공

1st Session
글로벌 FTA 경쟁체제의 도전과 한국의 전략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병일 한국경제 연구원 원장, 채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 시기와 TPP 협상의 과제, 한·중 FTA와 TPP 간 협상 전략 한·일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문제 등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채욱 교수는 TPP 협상 참여 시기에 대해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TPP 참여국들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TPP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빠른 시기에 참여해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채 교수는 “TPP 가입 반대 주장 중 하나는 ‘자유화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으면 TPP를 할 이유가 없다. 자유화가 높을수록 생산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입하지 않으면 생산 네트워크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일 원장은 “‘왜 한국이 FTA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TPP 참여가 가능하다”며 “한국은 분단국가이므로 국제정치적 측면과 글로벌 네트워킹 차원에서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이 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태호 교수는 “현재 한국은 중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한·중·일 등 8개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인데, 자유화의 정도는 TPP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TPP에 참여할 경우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므로 참여 시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지속해서 소통해야 한다. 또한 한·중 FTA가 완료되면 더 이상 무역을 늘리기보다는 무역을 이용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이 날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한국의 TPP 협상 참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향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2nd Session
시장개방과 산업통상전략

김종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산업별 전략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한호 교수는 무역 개방과 함께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국은 최고 수준의 토지 생산량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농가 소득이다. 직접적인 경쟁력 강화보다는 소득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농업 인구는 많지만, 지원 예산이 적어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책적인 조건이 많아서 ‘직접 지급’ 정책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이 한·중 FTA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자동차가 과잉공급될 것이고, 자동차 수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우리에게 없는 아이템이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 불안 요소로 여겨지는 것”이라며 “TPP의 경우 멕시코나 베트남은 문제되지 않지만, 사실상 한·일 FTA가 TPP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다. 관세가 폐지되면 일본에 자동차 경쟁국들이 몰려들 텐데, 개별 경쟁에서는 한국이 우위일지 몰라도 생산 구조상 산업에서 피해를 볼 것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구조를 지닌 일본이 ‘소품종 대량생산’의 생산 구조를 지닌 한국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무역조정지원대책’에 대해 발언한 허윤 교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2007년부터 6년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금까지 총 23건을 지원했다. 그러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1개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예산을 쓰다 보니 방향성이 흐려졌다”며 “FTA를 추진할 때 피해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추계하고, 보상 금액을 미리 추정해 내부 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rd Session
동아시아 정치구도와 FTA 비준의 과제 및 도전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은 박태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 번째 세션에 참가한 김성환 전 외교부장관, 최재천 민주당 의원,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정치구도와 FTA 비준의 과제 및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환 전 외교부장관은 “현재 TPP에는 한국과 양자협정을 진행하지 못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고, 일본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한·중 FTA를 먼저 체결하고 TPP로 나아가야 한다. TPP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치·외교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한·중 FTA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재천 의원은 관세 수입이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조적인 요소로 관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늘지 않고, 한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검토해본 뒤 다른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협상과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대내 협상과정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을 맡은 윤영관 교수는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TPP나 RCEP 같은 광역 FTA가 세계 통합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양극 경제권보다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TPP 협상의 핵심은 한국의 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TPP나 RCEP 등의 협상 중간에서 갈등하는 것보다는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상중계 2 개정 정부조달 협정(GPA) 설명회

해외 조달시장 문턱 낮아져…한국 기업들 해볼 만

지난 11월 27일 코엑스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한국무역협회 주최로 '해외 조달시장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실무자 200여 명은 WTO 통과를 앞두고 있는 GPA 개정안과 한·미 FTA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미국 조달시장 진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오간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글 김보람 기자

1st Session
WTO 정부조달협정의 특징과 해외정부조달 정보제공처 소개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은 1996년 1월 첫 발효된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양허된 기관의 양허하한 금액 이상의 일정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조달계약에 대해 GPA 가입국 사업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WTO 협정과 마찬가지로 회원국끼리는 내국민대우원칙, 최혜국대우원칙 등이 적용된다. 한국은 양허대상에 기재된 서비스만 적용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방식이나, 미국은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모두 GPA 협정이 적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방식이다. 현재(2013년 11월) GPA 회원국은 EU(27개국), 한국, 캐나다, 핀란드, 홍콩, 일본,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43개국으로,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2nd Session
개정 GPA 개요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장)

1996년 1월 발효된 현행 GPA 협정문은 1997년 개정 논의를 시작해 2004년부터 본격 협상이 진행됐고, 2011년 12월 15일 협상이 타결돼, 2012년 3월 WTO 정부조달위원회에 의제로 채택됐다. 개정안은 43개 회원국의 3분의 2(EU는 1개국으로 계산) 이상이 개정안 수락서를 WT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에 발효되고, 동 발효일 이후 수락서를 기탁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발효된다. GPA는 올해 WTO 각료회의에서 공감대를 갖고 43개국이 각국 비준을 완료 후 전체 발효하려 했으나 지지부진해진 상태로, 내년 1분기 중 발효를 목표로 재논의 중이다. 한국은 중앙정부 7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52개, 7개 공기업이 신규 양허대상으로 포함됐다. 특히 급식조달의 경우 예외주석을 신설해 학교급식 시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WTO 규범 위반 논란을 종식했다. 미국과 EU 등도 양허기관·양허품목이 늘어나고 양허하한선이 낮아지는 등 개방 범위가 늘어났다.

3rd Session
미국정부 조달시장 진출전략 (이형식 조달청 국제협력과장)

연간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은 단일 정부조달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한국은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로 양허하한선이 인하되고, 자국 내 실적 요구가 폐지되는 등 과거에 비해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 다만 한·미 FTA는 미국 내 중앙정부와 30여 개 지방정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주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2011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 부처별 조달 규모를 보면 국방부가 3,800억 달러(70%)로 가장 많고 이어 에너지부(250억 달러), 보건사회복지부(190억 달러)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조달물품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수품은 대부분 WTO GPA 미 양허대상으로 상호 국방조달 체결국에 한해서만 진출 가능하며, 한국은 진출 가능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형식 과장은 "미국 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조달시장이기 때문에 품질만 갖춘다면 진출 기회가 열릴 것이다"고 조언했다.

걱정은 저희에게 맡기고 수출만 하세요!

안종만

FTA 피해 구제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FTA로 입은 피해, 정부가 해결사로 나섰다

외국과의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산업도 있다. 이 경우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할수록 사회적 마찰이 줄어 FTA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시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글 이진원 기자 **감수**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목적

올해 초 공고된 2013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시행계획(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상담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지원을 도모

무역조정지원 대상은 피해가 중소기업이며, FTA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신청 대상

①제조업과 ②서비스업 모두 신청 대상이 된다. 여기서 서비스업(②)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을 말하며, 서비스업(②)으로 분류된 업종 내에서도 전기업, 수도사업, 철도 운송업, 항공운송업, 우편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했으나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날 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휴 폐업 중인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무역조정지원사업은 크게 ①무역 조정지원(융자·상담)과 ②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으로 나뉘며, 각각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다르다.

①무역조정지원(융자 및 상담)

구분	피해발생시점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10%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2013년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융자지원' 규모는 275억 원으로 융자지원 범위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이다. 대출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30억 원,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이나,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최대 7억 원이다.

융자조건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지원대상 선정은 무역조정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서 기업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게 된다. 산업부는 무역위원회에 의뢰한 무역피해판정 결과 및 중진공의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 뒤 다시 무역조정지원센터(중진공)로 통보한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판정되면 중진공은 직접 대출을 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 대출을 하게 된다. 대출 후에는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2013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상담 지원' 규모는 4조 7,500억 원으로 무역조정지원의 상담①과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②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상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 계획 실행 및 무역 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4,000만 원 이내로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경영 및 기술(생산) 전반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생산관리, 품질관리, 연구개발(R&D), 영업, 마케팅, 고객관리(CRM), 인사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유통·물류, 정보화, 각종 인증 등이다.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②의 경우는 산업부 및 무역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진공에서 직접 지원요건을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지원 절차

지원은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접수처는 중진공 지역본부 및 지부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 등이다. 신청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중진공이 제출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웹사이트 www.taa.go.kr 전화 02-769-6661~3 팩스 02-769-6665

미국 관세청(CBP)의 사전심사제도 활용하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고 싶으면 미국 관세청에 직접 문의

글 강동구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관세사

사전심사(Advance Ruling)란, 수출입물품에 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품목 분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수출입제한 사항 및 그 밖의 협정 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 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충족 여부 등을 미리 알아보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정국 관세당국에 질의하여 회답을 받는 제도다. 한·미 FTA 활용 과정에 있는 원산지증명과 사후검증의 부담에서 기업 실무자들을 구제해 줄 제도가 있으니, 바로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사전심사제도이다.

미국 세관(CBP)은 1989년부터 사전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세평가, 환급, 지적재산권(IPR) 등에 대한 사항은 '본청(Headquarter Office, 워싱턴 D.C.)'에서 담당하고, 품목분류, 원산지표기, FTA등에 대한 사항은 'NCSD(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뉴욕)'에서 담당하고 있다. 심사 신청은 수입자, 수출자, 심사신청건 관련자 및 이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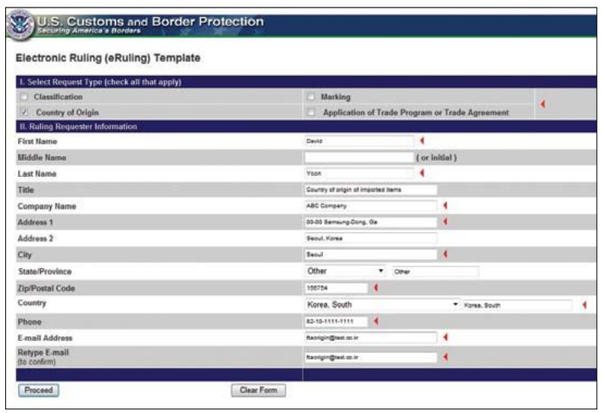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curing America's Borders

Electronic Ruling (eRuling) Template

I. Select Request Type (check all that apply)

Classification	Marking
Country of Origin	Application of Trade Program or Trade Agreement

II. Ruling Requester Information

First Name	David
Middle Name	(or initial)
Last Name	Yoon
Title	Country of origin of imported items
Company Name	ABC Company
Address 1	00-00 Samsung-Dong, Ga
Address 2	Seoul, Korea
City	Seoul
State/Province	Other / Other
Zip/Postal Code	156754
Country	Korea, South / Korea, South
Phone	82-10-1111-1111
E-mail Address	flaxlgin@test.co.kr
Retype E-mail (to confirm)	flaxlgin@test.co.kr

Proceed | Clear Form

(1) 서면 신청 시

별도 양식은 없으며 거래 관련 모든 사실, 예를 들어 신청자 인적사항, 반입항구명, 심사 신청 종류, 거래사실 등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사본을 포함한 서면(letter)을 우편을 통해 본청 또는 NCSD로 보내면 된다.

①관세평가, 운송수단 등 심사신청 우편 주소(본청)
The Commissioner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tention :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Washington, DC 20229,
(심사신청 부서명을 아는 경우 기재할 수 있음)

②품목분류 등 심사신청 우편 주소 (NCSD)
Director,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tn : CIE/Ruling Request
One Penn Plaza–10th Floor
New York, NY 10119

(2) 온라인 신청 시

미 관세청 홈페이지(http://apps.cbp.gov/erulings/index.asp)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①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다.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는 대상에 체크하고 성명,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레터의 제목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② 거래와 관계된 사실내용을 기재한다. 만약 물품과 관련하여 이전에 사전심사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첨부한다.

③ 서술한 내용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업로드 한 후 '제출(Submit)'을 눌러 제출한다.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은 최대 5개이며 전체 3.7MB까지 올릴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한다. 특히 품목분류와 관련해서는 해당 물품의 사진, 기능, 용도, 구성, 성분 등의 정보 등을 면밀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심사 결정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레터 형식으로 심사 대상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에 근거한 '사실관계(facts)', 심사 신청 종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사항(issue)', 검토된 법률 및 이에 대한 분석이 기재된 '법률검토·분석(law and analysis)' 및 최종 결론에 대한 '결정사항(hold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ROSS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30일 내에 심사 결정되어 신청자의 e-메일로 통보되며, 본청으로 신청한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되어 우편으로 발송된다. 결정 내용은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내 사전심사 온라인 사이트인 'CROSS(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http://rulings.cbp.gov)'에 등록·공표된다. 동 사이트에서는 유사 품목에 대한 심사 결정문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한·미 FTA 관련 사전심사 결정 사례(2건)

〈사례 1〉
'(PEG–Thiol)$_4$(HTSUS* 3907.20.00)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충족여부 질의(H233566)

●**개요** 본 제품은 원재료의 HS코드 6단위와 완제품의 HS코드 6단위는 동일하며 두 번의 정제(purified)공정을 통하여 순도 87%의 폴리에테르를 생산하여 완제품을 만든 것이다.

●**주요 제조공정**

①폴리에틸렌글리콜(HTSUS 3907.20.00)로부터 (PEG–MS)$_4$를 생산

②(PEG–MS)$_4$를 토대로 저순도의 웨트 케이크(wet cake) 상태의 (PEG–Thiol)$_4$를 생산

③웨트 케이크 상태의 물품을 1차, 2차 정제(purified)공정을 통해 순도 87%의 (PEG–Thiol)$_4$를 생산

●**결정**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시사점** 본 물품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이 아닌, 6부 또는 7부의 화학반응 규칙을 충족(순도 80%이상의 정제)함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산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업체는 '뱃치 프로덕션 & 콘트롤 레코드(Batch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s)를 포함한 정밀한 제조공정, 화학반응식 및 테크니컬 데이터 자료를 제출 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2〉
텅스텐파우더(HTSUS 8101.10.0000) 및 탄화텅스텐파우더(2849.90.3000)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충족여부 질의(N240148)

●**개요** 본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산화텅스텐파우더를 수입하여 텅스텐파우더(Tungsten powder) 및 탄화텅스텐파우더(Tungsten carbide powder)를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것이다.

●**주요 제조공정**

①중국에서 텅스텐 광(Ore)을 채취

②12단계에 걸쳐 산화텅스텐파우더 생산 후 한국으로 수출

③환원과정 및 탄화과정을 거쳐 텅스텐파우더 및 탄화텅스텐파우더를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

●**결정** 한국산 물품임이 인정되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시사점** 원광 및 중간생산품은 중국산이었으나, 환원과정 및 탄화과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사례다.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조공정도(flow chart)를 통해 원재료의 원산지, 공정의 변화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며, 특히 한국에서 환원 및 탄화과정이 이루어짐을 생산일지, 설비목록 등을 통해 증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두 가지에 대해 사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음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빙서류를 갖추게 되었다.

*HTSUS(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관세율표로 8단위 또는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나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을 따르고 있다.

FTA활용 팁–**국내제조(포괄)확인서**

국내에서 공정 이루어진 수출품의 역외산 부품 부분도 국내제조 확인되면 역내 부가가치 인정

글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원재료를 생산해 납품하는 업체의 제품이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역외산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거래선 전환을 통해 역내산 판정이 가능하도록 FTA에 맞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은 그 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역내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최종 완제품이 역내산으로 판정되지 못하여 FTA 양허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역내산 원재료나 부가가치부분에 대해서도 도매금으로 역외산으로 계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원재료 생산 납품업체에게나 완제품 생산자에게나 모두 억울한 일이 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도다.

동 제도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생산·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생산공정을 서류로 입증해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을 유리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뿐 아니라 부가가치기준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1
면직물
(세번변경기준)

예를 들면 생산공정의 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유리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면직물(HS코드 5208)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면직물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번호 5208부터 5212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0까지, 5205부터 5206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4까지 및 5509부터 5510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적용하되 특정 재료가 사용된 경우는 4단위가 변화되더라도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면직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로서 면사가 있어야 하는데 면사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원면은 주로 수입하게 된다. 이때 원면의 HS코드는 5201, 면사의 HS코드는 5205에 해당되며, 면사의 원산지기준을 보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5까지 및 5501부터 5507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로서 세번변경기준 중 가장 엄격한 CC(2단위 세번변경기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법정 서식

이 사례에서 중국산 원면(HS코드 5201)을 수입해 한국에서 면사(HS코드 5205)를 제조했을 때, 면사는 CC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역외산이 된다. 본 역외산 면사(HS 5205)를 원료로 공급받아 면직물(HS 5208)을 제조한 업체에서의 원산지 판정은 원산지기준에 따라 4단위 세번변경은 이루어졌으나, 제외규정(yarn-forward)에 속해있는 역외산 원사(HS 5205)를 사용해 가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의 결과물인 면직물은 역외산으로 판정이 되어 결국 FTA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면사 제조업체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해 전달해 준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면사 제조사는 본인들이 만드는 면사는 역내산이 될 수 없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는 없지만, 중국산 원면을 사용하여 면사를 제조했다는 증빙서류인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최종 완제품의 면직물 생산단계에서는 생산공정의 누적규정(한·미 FTA 6.5조)에 의하여 본건의 경우 중국산 원면(HS 5201)에서 역내 생산공정이 이뤄진 면사 제조사나 면직물 제조사를 하나의 공정으로 크게 보게 되어, 면직물의 원산지기준인 CTH 기준과 또한 제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판정이 되어 FTA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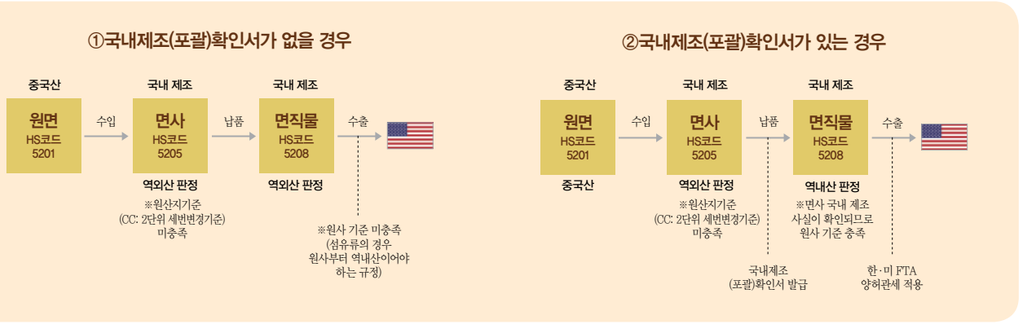

사례 2
그라인딩휠
(부가가치기준)

국내제조(포괄)확인서에는 물품의 공급가격과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중 비원산지 재료의 품명과 가격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즉, 서류에 표시된 공급가액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국내부가가치로 인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라인딩휠의 예를 들어보자. 그라인딩휠은 HS코드 6804.21로 한·아세안 FTA에서의 원산지기준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RVC 40%(역내 부가가치 40%)이상이다. 그라인딩휠을 만드는데에 소요되는 원재료 중 역외산 재료는 오른쪽 표와 같다.

표에 나열된 역외산 재료를 제외한 그라인딩휠의 역내 부가가치는 33%가 산출된다. 만약 위 재료 중 휀크(shank) 제작업체가 그라인딩휠 생산업자에게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해당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상의 비원산지 재료비가 휀크 공급금액의 50%를 차지한다고 가정해 보자. 휀크 공급가액 6,000원 중 50%를 제외한 3,000원에 대해서는 국내부가가치로 인정받게 된다. 이런 결과로 그라인딩휠의 최종 부가가치율은 45%가 산출되어 역내산 최종 제품으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도는 수출자 입장에서 볼 때, 공급받아 투입되는 원재료가 역외산으로 모두 산정되는 롤 업(Roll Up) 방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반영하지 못하는 역내 부가가치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 원재료·부품 공급자 입장에서도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역내산 판정이 된다면, 굳이 기존의 회사 거래선 등의 회사 시스템을 FTA에 맞게 변경하는 번거러움도 없게 되고, 고객사(수출자)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

현재 FTA 전문가들 중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용도가 세번변경기준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부가가치기준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본 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이해를 통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면, 원재료 납품 중소 제조업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완제품명 그라인딩휠(HS코드 6804.21)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 CTH 또는 RVC 40% 이상
물품판매가격 ₩ 24,200

완제품 중 역외산 재료

NO.	PART NAME	원산지	소요량	단가	가격(원)
1	아이언 파우더	미상	70	6	420
2	카퍼 파우더	미상	104	17	1,768
3	코발트 파우더	미상	2	80	160
4	틴 파우더	영국	26	38	988
5	다이아몬드 그리트	중국	12	160	1,920
6	휀크	미상	1	6,000	6,000
7	실버 솔더	미상	1	5,000	5,000

(역외산 재료인 휀크의 공급가 6,000원 중
국내 부가가치 3,000원을 역내산으로 반영)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완전정복

세관 또는 상의에 신청…컬러·양면 출력 필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는 자율 발급인 한·미 FTA 또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등과 달리 기관 발급 방식이다.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발급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최근엔 대부분 온라인 신청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글 이민선 관세사(Ciel HS)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기관발급은 세관(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 웹 인증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어느 쪽을 사용해도 신청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 다만 신청 전 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미 등록이 된 곳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누가 작성하는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Exporter) 또는 생산자(Manufacturer)가 작성 가능하다. 또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관세사도 작성 가능하다. 인터넷 상으로 신청 시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생산자' 입력란에서 'Exporter와 동일' 버튼을 이용하면 수출자란에 입력된 사항이 복사된다.

생산자가 작성할 때,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 생산자(주된 생산자) 정보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원산지소명서의 생산자정보란에 해당물품별 생산자를 기재한다.

자주 쓰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또는 수하인)의 거래처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일일이 상호·주소·국가명·대표자·전화번호(팩스)·e-메일·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언제 작성하는가: 수출 시 또는 수출 직후

한·아세안 FTA 부속서 원산지 운영규정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기는 '수출 시 또는 수출 직후'로 명시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시에는 선적 후 1년 이내까지 'ISSUED RETROACTIVELY'(소급 발행) 문구를 기재하고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 시'라고 하면 수출물품을 출하 후 선적 전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된 때를 말한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선적 당일을 포함해 후 3일까지는 '수출 시'로 본다. 따라서 수출신고 시점 이후라도 선적일 후 3일 이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적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을 제출해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수출 시(the time of exportation)'라는 용어를 선적 시점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어, 선적 전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특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선적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이외 국가는 선적 전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기관발급 절차

- **세관 발급(온라인)**

관세청 홈페이지 → 세관 통관포탈 사용승인 → 전자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세관 승인 → 발급(출력)

- **세관 발급(오프라인)**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온라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신청자 서명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상공회의소 인증 → 발급(출력)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오프라인)**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구비서류

(1)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2)상업송장(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3)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원산지소명서: 발급신청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법정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별첨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5)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세번변경기준 적용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②부가가치기준 적용 물품은 비원산지·원산지 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 관련 입증 서류(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③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상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필요로 한다.
(1)선적일 이후 신청 시: 선하증권(B/L) 사본 1부
(2)선적 1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시: 지연신청 사유서 1부
(3)신용장 거래에 따른 원본 2부 이상 필요 시: 신용장(L/C) 사본
(4)정정 재발급 시
①재발급 사유서: 정정내용, 사유 및 기 발급번호 등 관련 내용 기재
②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부(또는 인터넷 신청시스템에 입력)
③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④재발급 신청 입증자료
(5)원본 분실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서(사유 및 기 발급번호 등 관련 내용 기재)를 지참하고 발급기관에 내방하면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발행

원산지 소명 및 입증을 위한 근거서류는 대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함께 파일로 첨부하지만 팩스 등으로 별도 제출할 수 있다. 팩스 등으로 근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접수 완료 후 해당 증명서 신청 접수번호를 근거서류에 기재해 전송해야만 근거서류로 채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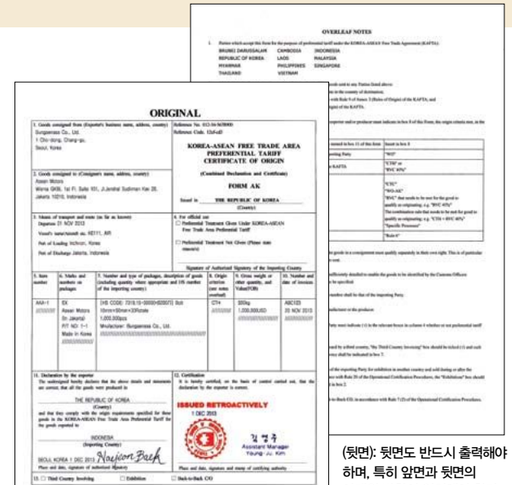

(뒷면): 뒷면도 반드시 출력해야 하며, 특히 앞면과 뒷면의 아래위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앞면): 예시처럼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한다.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소명 시에는 원재료 가격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수량은 표기한다.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원산지소명서 전체를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수입원자재에 대한 정보는 원재료명세서 란에 입력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소명자료의 제출(구비서류 (5)번)을 생략할 수 있다.

기관발급방식인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는 원재료구입명세서 등 다양한 종류의 구비서류를 수출시마다 반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매번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와 비교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수출기업의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 11일 이후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최근

1년 이내 동종·동질물품을 동일한 국가로 수출하거나 동일재료 및 동일공정 물품의 경우에는 필수서류(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원산지소명서) 외 추가 입증서류(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원산지확인서, 생산공정명세서, 매뉴얼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없이 신속하게 자동으로 발급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3가지 특례 사항

중계무역과 같이 3국 거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하단 '제3국 송장(Third Counrty Invoicing)'란에 체크(√)표기하고 제3국 바이어가 발행하는 상업송장(invoice) 정보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 7항 상품명세(Description)란에 추가 기재되어 출력된다. 전시회 참가 물품인 경우에는 'Exhibition'란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전시회명을 입력한다. 또한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기타 가공없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또 다른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예: 베트남→한국→필리핀)에는 'Back to back C/O(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 대상 품목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하다면 'Back-to-back C/O' 항목에 체크하고 그 근거가 되는 생산국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한다.

출력 시 주의할 점(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 웹 인증 시스템 중심으로)

공인인증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전송하고 나면 신청상태 란에 '접수 완료'라는 표시와 접수번호가 뜬다. 문서신청 완료 후 추가로 제출할 입증문서가 있다면 해당문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신청 후 대개 3일 이내에 발급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처리상태 란에 '발급 완료(Accept)'가 표시된다. 처리상태가 '보정 요청'인 경우 보정사유를 확인하고, 문서 수정 후 재접수 신청한다.

발급 완료된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컬러로 원본을 출력해야 한다. 발급기관 직인이 컬러로 출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본은 1부만 발행 가능하므로 미리 프린터를 점검하고, 사본을 먼저 출력해 본 후 원본을 출력하는 것이 좋다. 원본 출력 시 출력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출력 오류 또는 훼손된 원본을 첨부해(회수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재발급 신청을 통해 다시 원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발급 승인 후 출력 시에는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추가되어 인쇄된다.

한편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양면 출력으로 출력된 원본 뒷면에 반드시 'OVERLEAF NOTE'도 출력해야 FTA 특혜관세가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앞면과 뒷면은 아래위 방향이 동일해야만 하고, 동일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변경되는 사항

그동안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기업들은 수출가격 등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고 여러 수출물품에 대해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준비에 애로가 있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수출신고 시점 이후 다소 지연되거나 유효기간(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상대국이 효력을 부인하는 사례가 발생해 FTA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미얀마, 캄보디아는 2016년부터) 기업들의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원산지증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조자명과 가격정보(FOB 금액)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가격정보 기재는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첨부서식을 도입해 수출물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 한 건으로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베트남 통관시스템의 특징과 대처 요령

까다로운 통관 애로, 한·베트남 FTA 체결 시 해결 기대

호치민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잠자리 떼처럼 보이는 무수한 오토바이의 행렬에 감탄을 한다. 특히,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도로에서 수많은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접촉사고 하나 없이 통행하는 것을 볼 때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외지인들에게는 베트남의 도로는 무질서의 대명사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는 존재하며, 오토바이와 자동차, 길을 건너는 사람 모두 서로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예측해 가며 일정한 속도로 통행한다. 베트남의 통관시스템도 이러한 교통 시스템과 같은 듯하다.

글 홍석균 KOTRA 호치민 무역관 차장

1 화승 베트남공장에서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2 베트남 화폐인 베트남동(VND). 1동은 0.05원으로 사진 속의 20만 동은 원화 1만 원에 해당한다.
3 락앤록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연 김치만들기 행사.

Viet Nam

베트남 내 외국기업, 통관 절차에 "못 살겠다" 한 목소리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 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한다. 이는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례로 서류 작성에 드는 시간을 포함하여 통관에만 3~4일이 소요된다. 매매단말기(POS)와 소형스캐너를 취급하는 D사의 경우는 매달 200세트의 수출 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 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1만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과 과다한 시간 소요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변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제품을 역수출하는 과정에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을 빌미로 규정에 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호치민 시 세관에서는 외투기업의 이와 같은 불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통관에 3~4일이 소요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으며, 탁송물의 90%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당일 통관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식품류는 식품위생 관련 규정에 기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상품 테스트 등을 거쳐 통관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호치민 인민위원회 부의장 또한 기업이 세관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말고, 어떠한 부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베트남 정부는 뇌물 수수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베트남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유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 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다. 통관 활동은 세관 신고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된다. 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전자통관시스템 미비다.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로 인해 빈번한 통관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는 협력시스템 부재다.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 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은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다.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실적 솔루션으로 현지 아웃소싱도 방법

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을 '아웃소싱'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많은 외투기업이 세관 절차에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자사의 통관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물론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통관시스템 선진화와 통관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1 롯데마트 베트남 호치민점. **2** 지난 11월 12일 호치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아세안 FTA 설명회'에는 호치민 3대 방송사가 나와 취재를 하는 등 현지의 관심이 대단했다.

한·베트남 FTA 체결을 통한 협력 확대를 기대하며

11월 12일 호치민의 뉴 월드 사이공(New World Saigong)에서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한·아세안 FTA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코트라의 담당자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한·아세안 FTA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호치민 세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베트남 입장에서의 FTA 활용방안을 설명했다. 베트남 기업들과 현지투자 한국기업의 반응이 뜨거웠다. 준비된 좌석이 모자라 보조의자를 투입해야 했고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호치민 3대 방송사가 나와 방송을 취재를 하는 등 한·아세안 FTA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

아직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는 달리 베트남은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2018년에야 관세 철폐가 완료되는 등 관세 양허 스케줄이 느려 FTA 활용도는 아직은 높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대(對)베트남 투자국 중 3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무역수지 적자가 삼성전자의 핸드폰 공장 설립 이후 흑자로 돌아서는 등 양국의 협력 관계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한·베트남 FTA가 체결될 경우 이러한 양국가 간의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의 ODA 자금으로 베트남은 통관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있으나 그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한국도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과의 양자 FTA 협상에서 협력 챕터를 별도로 두고 있다. 한·베트남 FTA 협상 시 아젠다의 하나로 베트남의 통관시스템 현대화와 세관 직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통관 애로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기 쉬운 FTA–**FTA 효과 실현을 위한 조건들**

FTA, 협상보다 활용에 성패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FTA를 체결하면 우리가 원하는 무역 및 투자증진 효과, 경제체질 개선 효과를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FTA는 단지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적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일 뿐 FTA에 따른 이익을 우리 손에 넣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제반 조건들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목적과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 이경희 신세계그룹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한 이유

우리나라가 처음 FTA 정책을 추진 할 당시 정부는 FTA 추진 목표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FTA 역외 국가로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무역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2년 EU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당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FTA 네트워크의 역외 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비중이 100%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 확대가 필수적이었다.

둘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가 작용하였다. 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FTA를 능동적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1990년대 말부터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제3위의 경제영토를 갖게 되었다. 정부는 FTA 추진 목표에 맞춰 상품분야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 왔다. 또한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해 왔는데, 상품 협정의 핵심 부분인 관세 양허율은 평균 9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FTA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외개방과 연계해서 대내적으로 많은 제도개선 조치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FTA 효과를 충분히 누리려면?

우선적으로 FTA 정책의 성공 여부는 기업들이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FTA를 많이 체결해도 FTA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FTA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부족할 경우 기업들은 FTA를 활용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FTA 상대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데도 FTA 체결 이전처럼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대했던 FTA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FTA를 이행하고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현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FTA는 구조적 특성상 이익을 보는 산업과 손해를 보는 산업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 위주로 재편되며, 경제 전체의 체질도 강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업 급증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FTA 추진과 더불어 대내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FTA 발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도 이러한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국내의 제반 제도가 선진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FTA 혜택이 국민 경제에 골고루 스며들기 어렵다. 예를 들면, 상품이 이전보다 저렴하게 수입되어도 국내 수입시장이 독과점인 경우 소비자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 즉, 국내시장의 경쟁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관세 인하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개방으로 인한 혜택이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각 부문에서 경쟁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FTA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FTA 체결과 함께 전략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혁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FTA는 경제 선진화를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며, 글로벌화가 주는 충격을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내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12월

FTA news

정리 김보람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01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 개최
한국의 TPP 전략과 TPP 대응방안 및 피해분야 대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월 15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TPP 관련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TPP가 우리 경제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TPP 참여 또는 불참 시의 장단점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약 200여 명이 참여한 이 날 공청회는 한국의 TPP 전략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의 TPP 전략'과 관련, TPP 참여 시의 효과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귀 부연구위원은 TPP 참여 시 2.5%~2.6%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불참 시에는 발효 후 10년간 0.11~0.19%의 실질 GDP 감소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TPP 대응방안 및 피해분야 대책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방청객들은 정부의 향후 TPP 대응방안 및 피해분야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고, 향후 TPP 참여 추진 시 농업 등 예상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02
한·뉴질랜드 FTA 협상 재개 합의
2014년 2월 뉴질랜드서 제5차 협상 개최

2013년 12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한·뉴질랜드 FTA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금번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제5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협상을 2014년 2월 뉴질랜드에서 개최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뉴질랜드 FTA 공식협상은 2009년 6월 시작돼, 2010년 5월까지 4차에 걸쳐 이뤄진 바 있다. 양측은 제5차 공식협상에서 상품 시장접근 이슈, 양국간 이익의 균형 확보방안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양측은 금번 통상장관회담 계기로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뉴간 장관급 차원에서의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03
한·캐나다 FTA 협상 '실질적 진전' 확인
조속한 협상 타결 위한 상호 노력에 합의

2013년 12월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한·캐나다 FTA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양국은 제14차 한·캐나다 FTA 공식협상(2013년 11월 25~29일, 서울)에서 시장접근 분야와 협정문 분야 모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최대한 조속히 한·캐나다 FTA 협상의 타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금번 통상장관회담 계기,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캐나다 장관급 차원에서의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04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5차 협상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논의 진전… 투자 양허협상은 차기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8~21일 서울에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분야 제 5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날 협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터키 측에서는 경제부 야피치 EU 국장을 수석대표로 사파리 조약과장(서비스분과장) 및 악피나르 투자과장(투자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지난 8월 21~22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4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협정 문안의 기본구조에 합의하고,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는 한편, 투자 양허 협상은 차기 협상 시 진행키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협정문 관련 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 조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가시적 진전을 달성했다.

한·터키 FTA의 경우, 터키로서는 최초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서비스·투자 협정 체결 시 한·터키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05
크로아티아 한·EU FTA 가입
한·EU 정상회담에서 협정문에 가서명

크로아티아가 지난 7월 1일 EU에 가입함에 따라, 한·크로아티아 양국은 한·EU FTA의 3년 차 특혜관세를 상호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한·EU 양측은 고위급 사전협의, 화상회의, 제3차 한·EU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크로아티아를 한·EU FTA 당사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한·EU 양측은 협의를 마치고 한·EU FTA 협정문 수정에 합의, 11월 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수정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EU 양측은 향후 한·EU FTA 협정문 개정 부분의 정식서명 후 잠정발효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력키로 했다. 크로아티아는 EU의 28번째 회원국으로 인구 448만 명, GDP 640억 불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크로아티아가 한·EU FTA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대(對)크로아티아 무역흑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06 2013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
각국 원산지 규정·검증 절차 정보 나눠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11월 5~6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과 서울세관에서 WCO(세계관세기구), WTO(세계무역기구), 세계 관세 당국, 국내 정부기관, 학계 등 국내외 원산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3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의 첫날인 5일에는 미주개발은행의 조아킹 트레스(Joaquim Tres)박사의 '원산지제도 국제동향 및 FTA 활용 성공사례'와 정인교 인하대 교수의 특강, '중국·일본·멕시코의 원산지 검증제도 및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6일에는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의 특강과 인도, 캄보디아, 한국의 원산지 검증방식을 비교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의 관세 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에게 해당 국가의 원산지제도와 통관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

FTA 체결국의 이색적 크리스마스 축제를 가다

수북이 눈 쌓인 거리와 침엽수로 만든 트리, 그리고 털모자를 쓴 사람들.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크리스마스 풍경이다. 우리와 FTA 체결로 가까워진 나라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떨까. 반소매 옷차림에 땀 흘리는 크리스마스, 마음 속 앙금을 풀어내는 격투기를 즐기는 크리스마스, 오토바이를 탄 산타클로스 등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풍경을 찾아 떠나보자. 글 양충모 객원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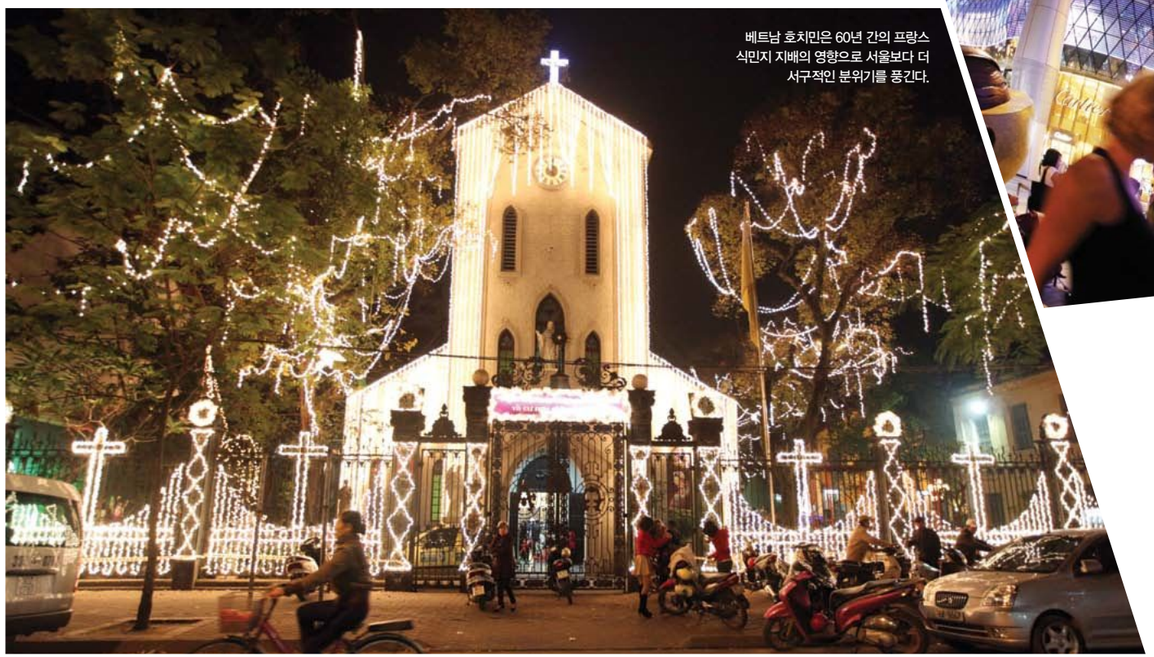

베트남 호치민은 60년 간의 프랑스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서울보다 더 서구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Viet Nam

베트남: 국가 4대 명절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전 국민의 85%가 불교 신자인 베트남이지만 크리스마스는 설(구정), 석가탄신일, 추석과 함께 베트남의 4대 명절로 꼽힌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집회 및 전도 행위는 제약을 받지만, 크리스마스만큼은 전 국민적 축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 60년 간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문화적 경험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은 수도인 호치민시(市)다. 12월 중순이 되면 윙후에, 레러이 거리 등 호치민 시의 중심가에는 반짝이는 일루미네이션과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은은한 조명이 식민지 시절 남겨진 서구풍의 건물들을 비추면 마치 유럽의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조차 들게 한다. 이런 느낌 때문에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은 서울보다 호치민에서 크리스마스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일 년 내내 뙤약볕인 열대몬순기후인 탓에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색다르다. 오토바이의 나라답게 거리의 산타클로스들이 조그마한 바이크를 타고 떼를 지어 이동하는 광경도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광경이다.

싱가포르 오차드로드의 점등행사는 론리플래닛의 '톱10 크리스마스 마켓'에 선정될 정도로 화려하다.

Singapore

싱가포르: 평균 기온 29℃의 크리스마스

12월 평균 최고기온이 29.9로 열대우림기우에 속하는 싱가포르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즐겨야 하는 다른 나라의 크리스마스와 달리 하루 종일 야외에서 축제를 즐겨도 동상에 걸리지 않는다. 반팔 차림의 산타클로스는 루돌프 사슴이 끄는 수상스키를 타고 해변 마을을 방문하며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행사는 올해로 30년째를 맞는 '크리스마스 인 더 트로픽스 (Christmas in the Tropics)' 점등행사다. 오차드로드(Orchard Road), 마리나베이(Marina Bay) 및 센토사 하버프론트(Sentosa HarbourFront) 지역의 거리가 수백만 개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과 장식으로 꾸며져 축제 참가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특히 오차드로드의 점등행사는 론리 플래닛(2011년 영국판)에서 선정한 '톱10 크리스마스 마켓', 인터내셔널 프레젠스 서베이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2011~2012)' 등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크리스마스 점등행사 중 하나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에서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마리나베이와 센토사 하버프론트에서 다양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펼쳐져 도시 전체가 신나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또한 베스트 드레서 빌딩 컨테스트,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의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비롯해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덥지만 화려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다.

페루의 쿠스코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 직전 치고받고 싸우는 결투 행사가 열린다. 사진은 가면을 쓴 행사 참가자들.

Peru

페루: 치고받고 싸우는 크리스마스

페루 쿠스코 춤비빌카스(Chumbivilcas) 지역에서는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조금 색다른 축제가 열린다. '타카나쿠이(Takanakuy)'라고 하는 결투 행사가 그것이다. 타카나쿠이는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언어인 케추아어로 '피가 끓어오를 때'라는 의미다. 한 해 동안 묵혀 두었던 안 좋은 감정을 풀고 서로 화해하기 위한 싸움 축제로 청년, 여성, 어린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춤비빌카스의 인구는 300여명에 불과한데 '타카나구이' 행사에 3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든다.

싸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상대편에 대한 발차기와 주먹질이 모두 허용된다. 좋게 말하자면 이종 격투기이지만 실제로는 마구잡이식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이빨로 물거나, 상대가 쓰러졌을 때 가격해서는 안 되며 모든 싸움은 포옹으로 시작해 포옹으로 끝을 맺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룰이 있다는 것은 심판도 있다는 뜻, 심판은 싸움을 중재하고 조정한다. 싸움이 끝나고 나면 참가자들은 화를 억누르고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술을 마신다. 싸움 자체에서 오는 스릴을 느끼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페루인들은 이렇게 축제를 치르고 나면 다툼 없는 새해를 맞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013년 FTA 5대 뉴스

한국의 FTA 전략 무르익은 한 해

2013년은 한국의 FTA 전략이 한층 성숙해지는 해였다. 3월 15일 1주년을 맞은 한·미 FTA의 성과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FTA 콜센터 1380이 개통, 한·터키 FTA 발효로 한국의 FTA는 정상궤도에 올랐다. 하반기에는 한·중 FTA 1단계 협상 마무리, TPP 참여 관심 표명 등이 이어지며 한국의 FTA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글 김보람 기자

1 TPP 협상 관심 표명 (11월 29일)

정부가 11월 29일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같은 '관심표명'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해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TPP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2010년에 시작돼 현재 19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다.

2 한·중 FTA 1단계 협상 완료 (9월 5일)

지난해 5월 14일 베이징에서 개시된 한·중 FTA 협상은 9월 3~5일 중국에서 개최된 제7차 협상에서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향후 양측은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3 한·터키 FTA 발효 (5월 1일)

5월 1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됐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EU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어 잠재력이 큰 국가다. 2012년 한국의 수출에서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0.83%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터키 FTA 발효는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FTA콜센터 1380 개통 (6월 24일)

FTA 활용 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번호 '1380'이 개통됐다. 중소기업 담당자가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를 하면 콜센터 상담직원이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업종별·분야별 전문가를 연결해 준다. 전화 상담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해결하는 현장 밀착 컨설팅을 지원한다.

5 한·미 FTA 발효 1주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후 1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해 짧은 기간에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축산물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9.1% 감소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eader's Letters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를 통해 FTA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와 다양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무역보험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다만 '함께하는 FTA'가 다소 딱딱하고 무게감 있는 정책 내용을 다룰 뿐 아니라 문화·예술·건강·공연 소식 등 가벼운 읽을거리도 함께 다루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휘곤(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FTA 활용에 실린 '내수 거래만 하더라도 FTA 사후 검증 대비해야' 기사를 읽고,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고, 내수 거래만 하는 업체라도 원산지 검증 관련 곤란을 겪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FTA 관련 공부를 철저히 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무역 시장에서 성공하길 바라며, '함께하는 FTA'가 열심히 공부하는 기업들에게 FTA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이춘임(경기도 포천시 광릉수목원로)

정부 간행물이라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니 참 유익하고 재미도 있네요. '컬처 윈도우' 코너에서 본추·류 두 선수의 활약상은 즐거움은 물론 감동까지 주네요. FTA와 함께 빛나는 여러 성과들과 함께 향후에는 세계 각지에서 승승장구하는 한인 경영인들의 멋진 사례를 많이 소개해주시면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성호(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강선로)

FTA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부족하여 매월 '함께하는 FTA'를 구독하여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알찬 내용 부탁드리고요. 국제 정치·사회 이슈도 함께 다루어주시면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쌓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FTA 관련 전문 용어를 따로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코너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하는 FTA' 파이팅입니다.
송종환(대구 수성구 신매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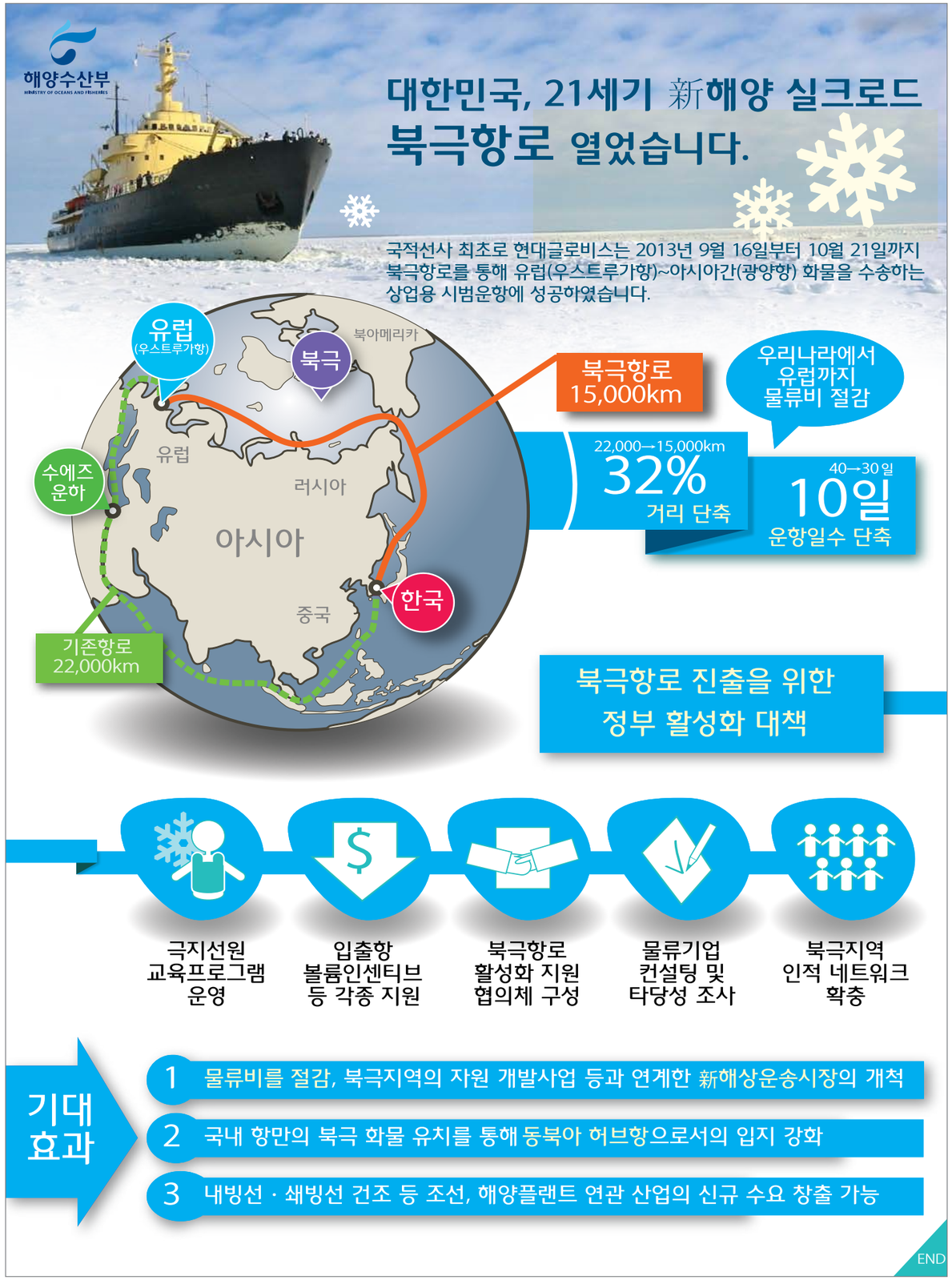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MOTIE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www.okfta.or.kr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FTA 콜센터 1380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

FTA 활용정보 통합제공
해외 전문가 초청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

▶ 교육 및 홍보

FTA 실무교육 제공 /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lting(교육+컨설팅)

▶ 애로해소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건의 /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FTA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컨설팅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H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